직제규정

```
제정 2009. 7. 23. 개정 2009. 12. 31.
개정 2010. 1. 27. 개정 2010. 2. 25.
개정 2010. 6. 29. 개정 2010. 12. 29.
개정 2011. 2. 25. 개정 2011. 12. 21.
개정 2012. 1. 19. 개정 2012. 12. 26.
개정 2013. 8. 22. 개정 2013. 12. 26.
개정 2014. 2. 26. 개정 2014. 6. 5.
개정 2014. 9. 5. 개정 2014. 11. 24.
개정 2015. 2.13. 개정 2015. 6.30.
개정 2015. 8. 31. 개정 2015. 12. 30.
개정 2016. 2. 25. 개정 2016. 7. 07.
개정 2016. 8. 31. 개정 2016. 12. 22.
개정 2017. 2. 24. 개정 2017. 12. 20.
개정 2018. 2. 1. 개정 2018. 2. 27.
개정 2018. 7. 6. 개정 2018. 12. 21.
개정 2019. 1.30. 개정 2019. 4.19.
개정 2019. 11. 29. 개정 2019. 12. 20.
개정 2020. 7. 1. 개정 2021. 2. 26.
개정 2021. 4. 20. 개정 2022. 1. 27.
개정 2022. 6. 24. 개정 2022. 12. 22.
개정 2024. 5. 2.
```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라 한다)의 조직과 업무분장을 정함으로써 진흥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진흥원의 직제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조(조직) ① 진흥원의 주요조직은 [별표 제1호]와 같다.
 - ② 진흥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주요조직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하부조직은 수행하는 업무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.
- 제4조(직제) 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며, 주요 조직별 직무분장은 [별표 제2호]와 같다.<개정 2009. 12. 31><개정 2011. 2. 25><개정 2012. 1. 19><개정 2013. 8. 22><개정 2014. 11. 24><개정 2015. 6. 30><개정 2015. 8. 31><개정 2015. 12. 30><개정 2016. 2. 25><개정 2016. 8. 31><개정 2017. 12. 20><개정 2018. 7. 6><개정 2019. 1. 30><개정 2019. 12. 20><개정 2020. 7. 1><개정 2021. 4. 20><개정 2022. 12. 22><개정 2024. 5. 2>
 - 1. 경영기획본부
 - 1의1. 정책연구실

- 2. 디지털위협대응본부
- 3. 개인정보안전활용본부
- 4. 정보보호산업본부
- 5. 디지털안전지원본부
- 제5조(조직의 개폐) ① 진흥원의 주요조직의 설치, 변경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한다.
 - ② 주요조직의 하부조직에 대한 설치, 변경 및 폐지는 원장이 한다.
 - ③ 원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한시적인 조직을 구성 및 운영 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요조직의 명칭변경은 원장이 정하되, 차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2. 13>
- **제6조(정원)** ① 진흥원의 정원은 일반직과 일반계약직 및 공무직으로 구분하며 [별표 제3호]와 같다. 단, 조직단위별 인원의 수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원장이 정한다.<개정 2016. 7. 7., 2019. 11. 29.>
 - ② 원장은 진흥원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 제1항 규정에 의한 정원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.
 - ③ 원장은 진흥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제1항의 정원 외에 둘 수 있다.
- 제7조(권한의 위임) 원장은 진흥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각 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14. 6. 5., 2018. 7. 6.>
- 제8조(부서장의 책임)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,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<개정 2014. 6. 5., 2018. 7. 6.>
 - ② 경영기획본부장은 보안담당관(CSO), 원내정보시스템 관리자(CIO)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(CPO) 업무를 담당한다.<개정 2010. 2. 25., 2011. 2. 25., 2012. 1. 19., 2013. 8. 22., 2015. 6. 30., 2018. 7. 6>
- 제9조(직무대행) ① 원장의 유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원장이 출장, 휴가 등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19. 11. 29.>
 - 1. 원장이 지명한 상임이사
 - 2. 선임(先任)비상임이사
 - 3. 선임(選任)이사 중에서 최연장자
 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출장, 휴가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이사로서의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.<신설 2019. 11. 29.>
 - ③ 각 부서장의 유고시에는 그 소속 직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원장이 직무대행자를 따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정하는 기준은 직제규칙에서 정한다..
- **제10조(직무대행 수당 등)**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규칙의 제정) 원장은 진흥원의 직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12조(감사실) 감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감사실을 둔다.<개정 2012. 1. 19>

제13조(위원회사무국의 운영)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,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 및 제32조에 의한 전자문서·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,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의7에 의한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을 둔다.<개정 2011. 12. 21, 2015. 12. 30., 2016. 8. 31>

제14조(한국인터넷정보센터)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한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둔다.<신설 2022. 12. 22>

부 칙<2009. 7. 23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[별표 제3호]의 직급체계는 근로기준법 제9 4조(규칙의 작성, 변경절차)에 따라 직원의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한다.

부 칙<2009. 12. 31>

이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<2010. 1. 27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단, [별표 제3호]의 직급체계는 근로기준법 제94조(규칙의 작성, 변경절차)에 따라 직원의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한다.

부 칙<2010. 2. 25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은 시행 당시 근로기준법 제94조(규칙의 작성, 변경절차)에 따라 직원의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도록 규정한 <별표 제3호>의 직급체계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설립 당시 직원에 한하여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한다.

부 칙<2010. 6. 29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0. 12. 29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1. 2. 25>

이 규정은 2011년 3월 4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<2011. 12. 21>

- 이 규정의 제13조(위원회사무국의 운영)는 2011년 9월 30일부로 시행한다.
- 이 규정의 [별표 제3호] 정원표는 2012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<2012. 1. 19>

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<2012. 12. 26>

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<2013. 8. 22>

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<2014. 1. 1>

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<2014. 2. 26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4. 6. 5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4. 9. 5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4. 11. 24>

- 이 규정의 시행일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- 이 규정의 [별표 제3호] 정원표는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<2015. 6. 30>

이 규정의 시행일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<2015. 8. 31>

이 규정의 시행일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<2015. 12. 30>

- 이 규정의 시행일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- 이 규정의 [별표 제3호] 정원표는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<2016. 2. 25>

- 이 규정의 시행일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- 이 규정의 [별표 제3호] 정원표는 2016년 2월 25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<2016. 7. 7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6. 8. 31>

이 규정의 제13조(위원회사무국의 운영)는 2016년 7월 25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<2016. 12. 22>

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<2017. 2. 24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7. 12. 20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8. 2. 1>

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<2018. 2. 27>

이 규정은 2018년 2월 27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<2018. 7. 6>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<2018. 12.21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단, [별표 제3호] 정원표 내 일반직 정원은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<2019. 1. 30>

이 규정의 시행일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<2019. 4. 19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 11. 29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단, [별표 제3호] 정원표 내 일반직 정원은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<2019. 12. 20>

이 규정은 2020년 1월 15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<2020. 7. 1>

이 규정의 시행일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<2021. 2. 26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1. 4. 20>

이 규정은 2021년 5월 10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<2022. 1. 27>

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<2022. 6. 24>

이 규정은 2022년 6월 24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<2022. 12. 22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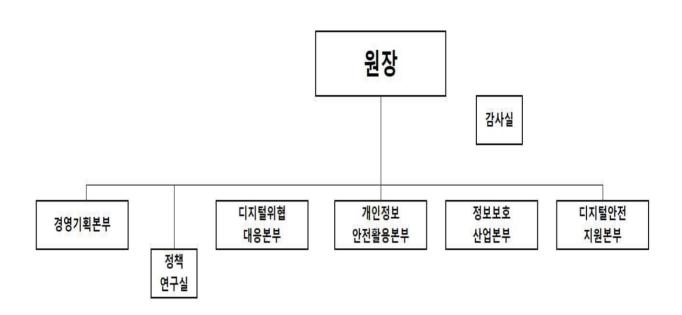
이 규정은 2023년 1월 9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<2024. 5. 2>

이 규정의 시행일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[별표 제1호] <개정 2009.12.31., 2011.2.25., 2012.1.19., 2013.8.22., 2014.6.5., 2014. 11.24., 2015.6.30., 2015.8.31., 2015.12.30., 2016.2.25., 2016.8.31., 2017.12.20., 2018.2.1., 2018.7.6., 2019.1.30., 2019.12.20., 2020.7.1., 2021.4.20., 2022.12.22., 2024.5.2.>

조 직 도



[별표제2호] <개정2010.2.25., 2010.6.29., 2011.2.25., 2012.1.19., 2013.8.22., 2014.2.26., 2014.11.24., 2015.6.30., 2015.8.31., 2015.12.30., 2016.2.25., 2016.8.31., 2017.2.24., 2017.12.20., 2018.2.1., 2018.7.6., 2019.1.30., 2019.12.20., 2020.7.1., 2021.4.20., 2022.1.27., 2022.12.22., 2024.5.2.>

직무분장표

부서명	분 장 직 무
경 영 기 획 본 부	○ 조직 및 정원 관리 ○ 기관 경영전략 수립 및 이행, 기관 성과 관리 및 대내외 기관 평가 대응 ○ 열린혁신 과제발굴 및 추진관리 ○ 일하는 방식 및 업무프로세스 효율성 관리 ○ 인사 관리, 조직 및 개인 성과 평가, 급여 및 노무 관리, 복리후생 관리 ○ 사업계획 및 예·결산 관리, 원내 업무현황 관리 ○ 이사회 운영 및 제규정 관리, 국회 및 국정감사 대응 ○ 사회적가치 및 사회공헌활동 총괄 ○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○ 민간 일자리 창출 및 인권경영 전략 수립 및 관리 ○ 준법 · 윤리경영 전략 수립 및 추진 관리 ○ 원내 계약 및 구매 업무, 재무 관리, 자산 및 시설 관리 ○ 원내 정보시스템 및 관련 전산자원 관리 ○ 청사 및 사택 관리, 직원 정주여건 마련 ○ 비상계획관리 ○ 원내 정보보안 대책 수립 및 시행 등 정보보안 담당 ○ 전 각호의 부대업무
정 책 연 구 길	○ 정보보호 중장기 전략 수립 및 대응 ○ 정보보호 이슈분석 및 정책 연구 ○ 정보보호 정책 및 연구·사업성과 확산 ○ AI 보안 정책 기획 및 신규 정책 발굴 ○ AI 보안 관련 위협·이슈 분석 및 정책연구 ○ 정보보호 정책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지원 ○ 정보보호 정책 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획 및 운영 ○ 글로벌 사이버 보안지수(GCI) 대응 ○ 디지털서비스 플랫폼 실태 조사 ○ 원 통계 총괄 및 신규 통계 발굴 ○ 신기술* 정보보호 정책 대응 및 신규 정책 발굴·연구 * 우주보안, 항만·선박 보안, 5G/6G 보안, 양자 보안, 데이터 보안, 오픈소스 보안 등 ○ 정보보호 국제협력 총괄 및 국제이슈 조사·분석 ○ 0ECD, NIST 등 국제기구·기관 협력 및 대응 ○ 정보보호 · 디지털 법제도 총괄 및 조사·분석, 연구

부서명	분 장 직 무
	o 정보보호·디지털 관계 법령 제·개정 지원 및 이슈 대응 o 홍보 및 언론보도 지원·대응 o 온·오프라인 홍보채널·콘텐츠 관리 o 전 각호의 부대업무
디지 텐 위 쳡 대 % 본 부	 ○ 본부 비전 및 전략 수립, 사업성과 관리, 침해사고 예방·대응·협력 중장기 전략 수립 ○ 침해대응 국내외 협력활동 및 침해사고 공조 대응, 정보보호최고책임자(CISO) 제도 운영 ○ 지능형 사이버 위협정보 탐지, 침해사고 정보수집 및 분석·공유체계 구축·운영 ○ 사이버침해대응 종합상황실 운영 및 인터넷침해대응시스템 고도화 ○ 사이버 보안 AI 데이터셋 구축 및 개방 ○ 사이버공격 피해시스템 알림서비스 및 치료체계 운영 ○ 악성코드 탐지·분석 및 삭제·차단 조치, 해킹공격 및 신규 취약점(제로데이) 분석·대응 ○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, 관련 기술 지원 ○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및 국가보안취약점 관리체계 구축·운영 ○ 서버 원격보안점검서비스 및 기업대상 웹보안도구 보급 운영 ○ 보안 취약점 점검기술 개발 및 개선조치 기술지원, 이행점검 ○ 민간분야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·평가 및 예방·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○ 인터넷주소 정책개발 및 관련 대외 협력 ○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시스템 운영 및 국가DNS 시스템 고도화 ○ 번호변작 방지 정책개발, 기술적 대응 및 전기통신사업자 검사 지원 ○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보이스피싱·스미싱 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 ○ 점해사고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 ○ 전 각호의 부대업무
개 인 정 보 안 전 활 용 본 부	○ 본부 비전 및 전략 수립, 사업성과 관리 ○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, 중장기 전략수립 ○ 개인정보 가명・익명처리, 가명정보 결합 지원・관리 ○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 및 정책연구 ○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지원 및 실태조사 ○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국제정책 대응 및 국제기구 협력 ○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및 자율규제 제도 운영 및 활성화 ○ 개인정보 포털 및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○ 개인정보 처리·유노출 점검 및 대응, 관련 기술지원 ○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, 불법스팸대응센터 운영 ○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○ 개인정보유출신고제 및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운영 ○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조사

부서명	분 장 직 무						
	o 스팸 방지 정책개발, 기술적 대응 및 국제협력						
	o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육성체계 구축 및 기술개발 지원						
	o 위치정보산업 육성 및 위치정보 이용한 사회안전망 고도화						
	o 본인확인 정책지원 및 본인확인지원센터 운영						
	o 개인정보 전송 정책 연구 및 지원 플랫폼 구축·운영						
	o ICT분쟁조정 사무국 운영 및 분쟁예방 제도 활성화						
	o 전 각호의 부대업무						
	ο 본부 비전 및 전략 수립, 사업성과 관리						
	o 보안산업 활성화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						
정	0 정보보호 스타트업 발굴육성						
보	o 정보보호 관련 대국민 인식제고						
보	o 물리보안, 정보보호 및 바이오인식 제품 시험·평가·인증						
호	o 융합보안 정책·전략 수립 및 실증, 융합산업 신규취약점 분석·진단						
산	o 정보보호 산업 해외진출 지원 및 해외거점 운영						
업	o 암호 정책·기술 개발 및 이용 활성화						
본	o 사이버 침해대응 및 인프라 보안기술 개발						
부	o 정보보호 교육 기획 및 정책지원						
	o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및 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·운영						
	o 전 각호의 부대업무						
	o 본부 비전 및 전략 수립, 사업성과 관리						
	o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구축 및 정책지원						
디	o 전자정부 정보보호 정책개발 및 기술지원						
지	o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정책·기술연구 및 검증지원						
털	ο 디지털, 전자서명 인증관리 및 인증산업 활성화 지원						
안	o loT보안인증 및 취약점 분석						
전	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(ISMS-P) 인증, 정보보호서비스 전문업체 지정·관리						
ا ا	ο 클라우드서비스 보안 인증제도 운영 및 관련 기술 지원						
원	ο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확산지원 등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						
_ 본	o 인터넷 서비스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지원						
_ 부	o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 및 웹 기술 경쟁력 제고						
'	o 전자문서 이용·산업 활성화 정책수립 및 서비스 모델 발굴						
	o 공인전자주소 제도 운영·이용 활성화,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전자문서유통센터 운영						
	o 전 각호의 부대업무						
	o 일반감사, 특별감사, 일상감사 등 자체감사						
	ㅇ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감찰						
감	o 부패신고센터 운영 및 비위사건의 조사·처리						
사	o 주무부처·감사원 수감업무 총괄						
실	o 행동강령·청렴시책 관리 등 청렴도 업무 총괄						
	o 윤리헌장 및 시행지침 관리·운영 등 윤리경영 총괄						
	ο 전 각호의 부대업무						

[별표 제3호] <개정 2010. 1. 27, 2010. 12. 29, 2011. 12. 21, 2012. 12. 26, 2013. 8. 22, 2013. 12. 26, 2014. 9. 5, 2014. 11. 24, 2015. 12. 30, 2016. 2. 25, 2016. 7. 07, 2016. 12. 22, 2017. 12. 20, 2018. 2. 27, 2018. 2. 27, 2018. 12. 21, 2019. 4. 19, 2019. 11. 29, 2021. 2. 26, 2022.1.27, 2022.6.24., 2022.12.22., 2024.5.2.>

< 정원표>

(단위: 명)

직급	임원	1급	2급	3급	4급	계
일반직	1	26	100	219	178	524
일반계약직	-	14	50	54	34	152
공무직 - 89 (무직급)						

※ 정원표 내 임금피크제 별도정원은 포함하지 않음